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審 査 報 告 書

2006. 5. 1.
제249회 임시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 필용 의원의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6. 4. 27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 필용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○ 이 조례의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 등 3개 협의회에 부의장 직을 신설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항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○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에 부의장 1인을 두어 의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함 (안 제9조 제1항, 안 제13조제1항, 안 제17조제1항)

※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공동의장(도지사와 민간대표자 1인)을 두고 있어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여도 회의운영에 지장이 없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 사고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협의회에 부의장을 두고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중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중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장중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지역혁신협의회</p> <p>제 9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</p> <p>제 13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3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삶의질향상협의회</p> <p>제 17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7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제28조 (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) ①시·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시·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시·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⑤시·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시·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
⑦2 이상의 시·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